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의결주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 승진심사 요건으로서 교육이수제의 대상 직렬에 조사사무직렬을 추가하고자 함
- 채용시험 관련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6급 이하 법원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교육이수제 대상 직렬에 조사사무직렬 추가

가사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및 승진심사의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하여 교육이수제 대상 직렬에 조사사무직렬을 추가함(안 제10조의3제1항)

### 나.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관련 규정 신설

공무원 채용 비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절차, 채용 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규정을 신설함(안 제62조의3 및 제62조의4 신설)

#### 다.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및 면제 확인절차 규정 신설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으로 차상위계층도 채용시험 응시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 대상자를 간이하게 확인하는 절차 규정을 신설함(안 제66조제3항, 제66조제4항 신설)

#### 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규정 신설

6급 이하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그 밖에 신상문제 등에 대한 고충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함(안 제131조제1항, 제2항 내지 제6항 신설)

#### 마. 그 밖의 규정 정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과금) 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규칙의 인용 조항을 정비함(안 제108조의2제2항 및 제5항)

### 4.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법원·등기사무직렬 및 사서직렬 공무원”을 “법원·등기사무직렬, 사서직렬 및 조사사무직렬 공무원”으로 한다.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의 채용 비위는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6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4(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소속하에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법률·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수급자 또는”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8조의2제2항 중 “제78조의2제2항”을 “제7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78조의2제3항”을 “제78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각 소속기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한다.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

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고충사안과 성별, 계급 등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되,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으로 한다.

⑥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의3(교육훈련과 인사관리)</p> <p>① 5급 이하 <u>법원·등기사무직렬 및 사서직렬 공무원</u>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승진심사의 대상이 되거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u>&lt;신설&gt;</u></p>	<p>제10조의3(교육훈련과 인사관리)</p> <p>① ----- <u>법원·등기사무직렬, 사서직렬 및 조사사무직렬 공무원</u>-----</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62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u></p> <p>① <u>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의 채용 비위는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② <u>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③ <u>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u></p>

에 따라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62조의4(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소속하에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신 설>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법률·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다.

<신 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한다.

<신 설>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신 설>

④ 위원장은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신 설>

⑤ 위원장은 고충사안과 성별, 계급 등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되,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으로 한다.

<신 설>

⑥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연 락 처	(02) 3480-1937